

축산업에 대한 소득 공제 제도



세무사 박 승 청

소·말·돼지·양·염소·토끼 및 친칠라·밍크·사슴·기타 특수동물을 생산하거나 낙농·양계·조류사육·누에기르기 및 꿀벌치기를 하거나 용역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부화·인공수정·거세·털깎기·병아리감별 등 축산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세법에서는 축산업으로 보고,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축산업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소득공제·특별비용의 용인·세액감면 등의 여러 가지 정책적 조세지원 이외에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기간에 걸쳐서 일정율의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세금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규정하여 더

많은 조세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6년간 중 축산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분에 대하여는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득공제의 세계상 지원을 받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축산업의 사

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서, 신고서와 함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법인의 경우는 축산소득공제를 적용한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잉여금처분에 있어서 축산소득으로 인하여 공제 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만일 기업회계상 처분가능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 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고 법인세를 추징 당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회계상 처분가능 이익이 당해년도에 적립하

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금액에 미달할 경우는 그 미달한 부분에 대하여 그 다음 사업년도의 이익잉여금처분시에 적립하면 된다.

이와같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으로의 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적립하고 있어야 한다.

(3) 장기차입금의 상환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인 아닌 사업자인 경우는 공제를 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채, 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②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

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되어야 한다.

(4)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과세공평을 기하고 국민은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수입 확보의 측면에서 조세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의 부담을 지우도록 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는 소득공제금액을 계상하기 전 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이외의 다른 소득공제가 있을 경우는 한도의 초과 여부를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방위세의 종과세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의 부담은 경감되었으나 방위세는 경감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과세를 하고 하다.

즉, 축산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에 대한 방위세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율 즉, 방위세의 세율이 10%인 경우는 15%를, 20%인 경우는 30%를, 25%인 경우는 37.5%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위세의 계산시 착오 없도록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

독자투고안내

「월간 양돈」지는 양돈인 모두가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구태여 무슨글을 보내달라고 못을 박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양돈업을 경영해 오시면서 터득한 새로운 기술정보나 소득정보 또는 성공담, 실패담, 임상수기, 건의사항, 양돈기술상담, 세무상담, 지부소식등 어떤 내용이던지 좋습니다. 도저히 바쁘셔서 원고술시간이

없으시다면 본지 기사를 불러 주십시오. 현지 취재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관심 뿐입니다. 아무쪼록 알찬 양돈 전문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채택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하겠습니다.